



1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무단 반출 입증

피해회사의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 제조 플랜트 설비 설계도면 등 파일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한 후 이를 자신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사례에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해 영업 비밀 침해 입증, 유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0000 사건)

2 피해회사의 서버에 무단 접속 및 열람 입증

피고인이 총 1,981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사업계획, 제안서, 교육 자료, 협력업체 계약서, 매출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검색·열람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사례에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해 영업비밀 침해 입증, 유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0000 사건)

3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퇴사 직전 다수의 자료 반출 입증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회사의 부설연구소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고인이 퇴사 직전 이틀간에 걸쳐 약 32,000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반출하고, 범죄일람표 '수정일자(엑세스일자)' 기재와 같이 퇴사 후 열람한 사실을 입증, 유죄 선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0000 사건)

4 노트북에 영업비밀 유출을 위한 설치 파일 실행 입증

업무용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노트북에서 00.0.0.경 '△△△ 접속연계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인 '000_setup.exe' 파일이 실행된 흔적 및 같은 날 위 프로그램 설치 시 생성되는 폴더 및 파일이 생성된 사실과 약 5개월 후 해당 프로그램 구성 파일들이 삭제된 사실을 입증, 유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0000 사건)

5 USB, 스마트폰 메모리 등을 활용한 기술 자료 저장·반출 입증

피고인이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이직 시 사용할 생각으로 '도면, 설비이력카드, 작업표준서, 생산일정' 등 핵심 기술 자료들을 USB 및 스마트폰 메모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임의로 반출한 사실을 입증, 유죄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0000 사건)



기업의 신속한 영업비밀
유출 피해구제 수단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내 '신청 접수 창구'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신청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대표 이메일 (tsep_help@koipa.re.kr)로 제출

신청 문의

TEL 1666-0521



Digital Forensic

기업의 신속한 영업비밀
유출 피해구제 수단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디지털포렌식과 영업비밀 보호

1 디지털포렌식

정의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행해진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기에서 수집, 분석, 보존한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증거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

기본원칙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증거력을 갖는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 자격 있는 전문가에 의한 수집, 분석, 검증 필수

정당성	디지털 증거는 적법한 절차로 수집
무결성	수집된 디지털 증거는 훼손·변조되지 않아야 함
신속성	디지털포렌식 전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
절차연속성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는 명확히 관리
재현가능성	같은 조건이라면 항상 같은 결과가 도출

2 영업비밀 개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

- 영업비밀을 포함한 기업의 많은 정보들이 쉽게 복사·유출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에 저장
- 영업비밀 유출피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출피해와 관련한 증거를 디지털 기기로부터 확보하기에는 절차적·기술적·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 기업의 신속한 영업비밀 유출 피해구제와 증거 확보를 위해 신뢰성, 보안성 및 공공성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필요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소개

1 목적

영업비밀 유출피해 기업의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형사적 피해구제 지원

2 지원대상

영업비밀 유출피해가 의심되어 증거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비 용** 무료
- 지원한도** 영업비밀 유출사건 당 최대 10개 기기* 한도 내 분석지원
*(한정) 신청기업이 소유권을 확보한 디지털 기기

4 지원범위

영업비밀 유출 피해 상담	• 영업비밀 유출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 자문 • 디지털포렌식 지원 가능 범위 협의 등
디지털 증거 수집	• 적법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 수집 • 현장 수집 또는 포렌식분석실에서 접수
디지털 증거 분석	• 영업비밀 유출피해 입증과 관련된 행위 및 자료에 대한 분석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제공	• 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공

5 디지털포렌식 대상

조사 대상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유권 확보 필요

	• 연결된 저장장치 • 이메일 • 웹브라우저 • 삭제파일 복구		• 연락처 • 메시지 • 통화내역 • SNS내역
	• USB • 외장하드디스크 • SD카드		• 서버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 대용량 스토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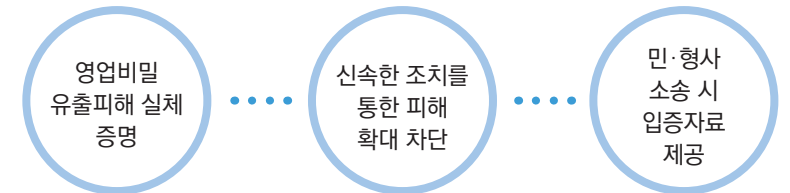


디지털포렌식 지원절차

1 지원절차

1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 유출피해 상담 기업↔센터	2 사전준비 법률적 검토 포렌식 상담 조사대상 확인 지원계획 수립 기업↔센터	3 증거수집 현장 대응 증거물 수집 이미지 생성 수집확인서 교부 센터→기업
4 증거이송 증거포장·봉인 증거이력관리 센터	5 증거분석 영업비밀 유출행위 분석 센터	6 결과제공 분석보고서 전달 센터→기업

2 활용성



3 특장점

영업비밀보호센터 디지털포렌식 사업	
안정성	소송 진행 동안(통상 4년 이상) 포렌식 자료의 안정적인 보존 및 관리가 용이하며, 필요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원본 존재 및 보유시점 입증 확인 제공
보안성	발명진흥법 제59조에 의거 “정보취급과정에 대한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철저한 보안 절차 준수
공공성	발명진흥법 제55조3에 의거 “영업비밀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업무수행”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
신뢰성	사업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을 갖춘 내부 전문인력에 의한 업무 수행
후속지원 연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상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연계가능